

제20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

2022. 5. 11.

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

<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>

- 1.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(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 - 재정·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
- 2. 상고제도 개선(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)
 -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복합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형태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
 - 우선,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, 현재 대법원에 접수 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,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적 기대를 충족하고,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함. 다만, 대법원 재판 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,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 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, 대법 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함이 바람직함
 - 현 단계에서도,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



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, 상고이 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.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하여 추후 사법행정 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

<다음 회의 일정>

■ 제21차 회의(정기회의): 2022. 6. 8.(수) 14:00 개최 예정